

#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1460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23. 10. 16.
4. 회부일자 : 2023. 10. 23.

## II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법규 제명 개정 등에 따른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,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

## III. 주요내용

- 2023. 6. 27.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이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으로 제명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중 동 제명 인용조문 정비(안 제 1조 ~ 제3조)

- 2021. 1. 7.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」가 전부개정되어 제명이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」로 개정 되고 일부 조항 이동으로 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중 동 조례 인용조문 정비(안 제4조)

#### IV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[별첨 6]

-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, [별첨 2])

다. 협의: 일괄정비 대상 조례 소관부서 협의 완료

라. 기 타

- 1) 입법안 [별첨 1]
- 2) 입법예고 결과: 미실시 [별첨 3]  
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제4호
- 3) 교육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4) 부패영향평가: 해당없음
- 5) 성별영향평가: 성별영향평가 제외 통보확인서 [별첨 4]
- 6) 학생인권영향평가: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[별첨 5]

## 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60호로 제출되어 202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 조항의 변경 사항을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일괄정비 조례안은 총 4개 조문으로,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각 해당 조례 내용 중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을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으로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또한 안 제4조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·지원에 관한 조례」 중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」로 변경하고,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처럼 동 일괄정비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이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으로 제명이 변경<sup>1)</sup>된 사항과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

1)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[시행 2023. 6. 27.] [대통령령 제33575호, 2023. 6. 27., 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

행정기관의 장이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도록 하고, 행정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제명을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에서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으로 변경하며,~(이하 생략)~

조례」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」로 전부개정 (2021.1.7.) 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.

○ 따라서 동 일괄정비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조례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일괄 반영한 것인바, 이는 자치법규의 법적안정성과 시민 편의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고,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□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의안심사지원팀장

정진국  
(2180-8263)